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검 토 보 고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47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총괄적 검토 .....                  | 4  |
|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취지 .....           | 4  |
| 2. 제정안의 구성 .....                   | 5  |
| 3. 총괄 검토의견 .....                   | 6  |
| 4.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 8  |
|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9  |
| 1. 목적 및 정의 .....                   | 9  |
|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등 ..... | 13 |
| 3.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 설치 .....           | 17 |
| 4. 금융·재정지원 및 조세특례 .....            | 19 |
| 5.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 23 |
| 6. 지도와 감독 .....                    | 28 |



## I. 개요

### 1.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47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7. 25.
- (3) 회 부 일 : 2024. 7. 26.

#### 나. 제안이유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만으로는 다각화된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 및 고도화, 품질 개선,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계획 및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보급 및 개선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개발·보급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과 성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조합, 금융지원기관에 대한 출자 등 금융 및 재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관리를 실시하

고, 고시한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품질인정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필요  
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  
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23조).

## Ⅱ. 총괄적 검토

###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취지

□ 제정안은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포함한 기존의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만으로는 다양해진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 인식에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기본법적 수준의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책임과 기본계획의 수립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서비스 공급 유인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 지원·육성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급격한 성장과 민간 부문의 확대에 의한 서비스제공자 간 과도한 경쟁구조가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종사자들의 저임금,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제정되었음.

-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중점을 두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정된 법임.

□ 제정안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참여를 장려하고 이들에 대한 금융·재정 지원 및 품질관리 등의 내용으로서, 「사회서비스원법」과는 제정 목적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 제정안의 구성

□ 제정안은 5장,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조문 구성>

| 장 구성                | 조문   | 주요 내용               |
|---------------------|------|---------------------|
| 제1장 총칙              | 제1조  | 목적                  |
|                     | 제2조  | 정의                  |
|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 제6조  | 지역계획의 수립 등          |
|                     | 제7조  |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        |
|                     | 제8조  | 실태조사                |
| 제3장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시책 | 제9조  | 사회서비스의 개발·보급등       |
|                     | 제10조 | 사회서비스 기술 등의 연구·개발사업 |
|                     | 제11조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보호     |
|                     | 제12조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    |
|                     | 제13조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
|                     | 제14조 | 금융지원                |
|                     | 제15조 | 재정지원                |
|                     | 제16조 | 조세의 감면              |
| 제4장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제17조 | 평가                  |
|                     | 제18조 | 품질인정                |
|                     | 제19조 | 인정서와 인정마크           |
|                     | 제20조 | 평가 면제의 특례           |
|                     | 제21조 | 인정의 유효기간            |
|                     | 제22조 | 품질인정의 취소            |
|                     | 제23조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                     | 제24조 | 지도와 감독 등            |
| 제5장 보칙              | 제25조 | 청문                  |
|                     | 제26조 | 수수료                 |
|                     | 제27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
|                     | 제28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                     | 제2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제30조 | 과태료                 |

### 3. 총괄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 (2022.12.20.)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이용 의향률은 조사 대상 가구의 60%로, 실제 이용률(33.1%)보다 약 2배 높아 사회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사회서비스는 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일반 국민과 중장년층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022년 기준,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8만 5,361개소<sup>1)</sup>이고, 향후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으로 추정되는바, 민간 사회서비스 영역을 활성화하고 지원·육성·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은 이와 같은 전망에 맞추어, 금융·재정 지원 및 조세특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규정하여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참고1】 참조).

- 사회서비스 고도화란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을 확충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수요개발·품질관리·공급기반 확충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중산층 이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것임.

1) 2022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사회복지서비스업(87)'에 속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 수

□ 다만, 제21대 국회에서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법률안<sup>2)</sup>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혁신 강조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는 사회서비스 민영화의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당시 강조되었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sup>3)</sup>이 제기된 바 있음.

□ 또한, 제정안은 현행 「사회서비스원법」 과,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법」을 사회서비스원 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취지의 개정안<sup>4)</sup>을 전제로 하여, 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법률안<sup>5)</sup>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2)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944호)

3)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2023년 6월 기자회견)

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943호)

5)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944호)

#### 4.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품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진흥하기 위한 법적 기반 필요.

- (수정 필요사항)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제1항제2호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조항으로서, 입법체계 상 삭제 필요.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수정) 개별법 상 세제지원은 선언적 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 (기재부) 비과세, 감면을 통합관리 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배치.

- (행안부) 지방세 감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지방세 특례 운영 혼란 야기 우려.

□ (행정안전부: 수정) 위원회 신설보다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복지부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필요.

- 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기관 내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정) 법 제정 취지 동의하나, 「이용권법」, 「사회복지사처우법」 등 간 역할 중복으로, 일부 조항 실익 없음

- 제정안 제11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대상, 기능과 중복됨.

### Ⅲ. 주요 내용별 검토

#### 1. 목적 및 정의

#####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여 모든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안 제1조), 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제공기관·사회서비스 이용자·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2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 및 고도화, 품질 개선,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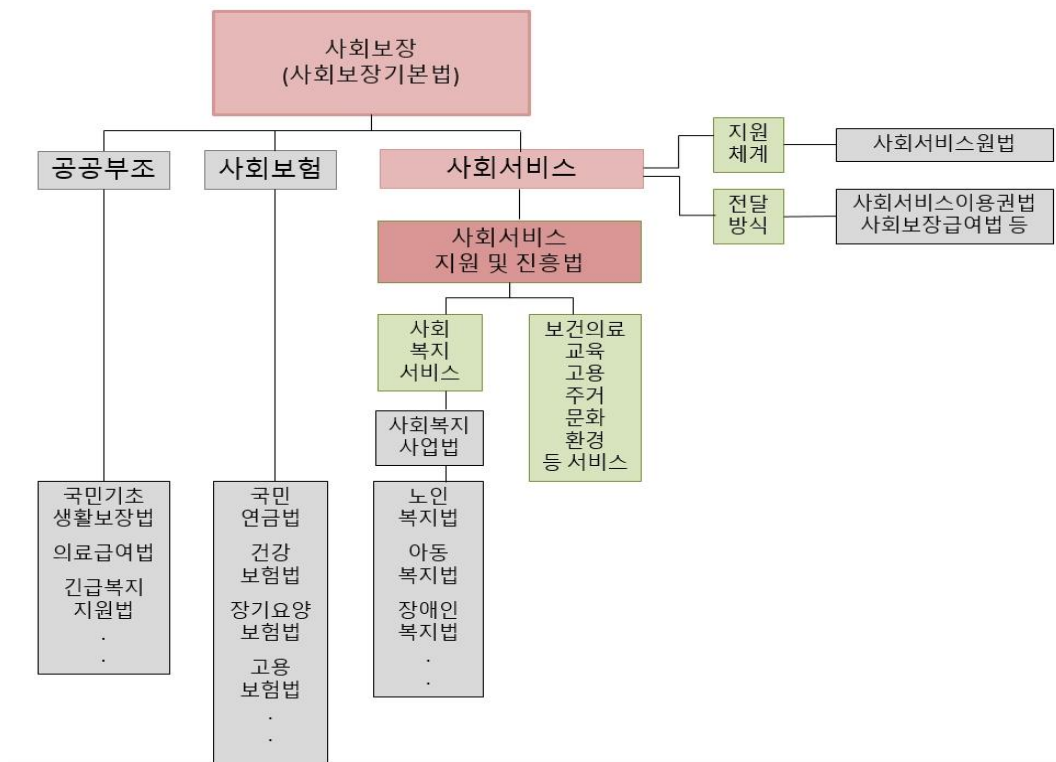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나. 검토의견

- (목적 조항 관련) 제정안은 사회서비스의 확대 및 고도화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든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기본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 간의 관계>



- 제정안을 기존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과 비교해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서비스를 비롯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전달방식 중 이용권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들은 목적 및 내용 등에 있어 제정안과 크게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서비스 분야 지원체계인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을 주로 규정한 기관법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목적 규정<sup>6)</sup>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와 일부 유사·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정의 조항 관련) 제정안은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자, 사회서비스 종사자 등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일부 용어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법」 및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서도 정의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제정안은 사회서비스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부로 정의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법」<sup>7)</sup>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의 규정이 상이함에 따라 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6)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서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 정의하여 기관뿐 아니라 개인도 포함시키고 있고, 「사회서비스원법」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는 기관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 반면, 제정안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시 「사회서비스원법」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종사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제정안은 「사회서비스원법」에 비해 규범 대상의 범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상 혼란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 제정안 및 다른 법률과 정의 규정 비교 >

|            | 제정안                                               | 「사회서비스원법」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
|------------|---------------------------------------------------|-----------------------------------------------------|-----------------------------------------------------------------------------|
| 사회서비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 <sup>8)</sup>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는 기관 |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                  |
| 사회서비스 이용자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
| 사회서비스 종사자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8)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등

###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안 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 시·도지사의 지역계획 수립 의무를 정하고 있음(안 제5조·제6조).

#### 제1장 총칙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성·전문성·투명성·창의성·다양성 등 (이하 “공공성 등”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서비스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서비스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실행 방안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6.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
7.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8.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 및 개선 방안
9. 사회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 방안
10.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검토의견

□ 제정안은 사회서비스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원법」의 규정<sup>9)</sup>과 비교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중 공공성 등을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제1항),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및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며(제2항),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적절하고 충분한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5항)는 내용 등

9)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이하 “공공성등”이라 한다)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실행 방안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6.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
7.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8.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 및 개선 방안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유사한 측면이 있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안 제5조제 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내용이 동일하고, 지역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도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제정안과 「사회서비스원법」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제정안은 ① 사회서비스의 진흥 및 활성화를 강조하였고, ② 기본법적 성격에 따라 종사자의 소속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등을 폭넓게 규정하였으며, ③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에 더해 1년 주기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추가하였음.

□ 동일한 내용을 두 개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고, 제정안이 보다 사회서비스의 지원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의 규정 중 제정안과 동일한 내용은 제정안으로 이관하는 형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제21대 국회에서는 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법률안<sup>10)</sup>과 더불어 「사회서비스원법」의 유사·중복된 내용을 동 법률안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안<sup>11)</sup>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10)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944호)

1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943호)

### 3.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 설치

####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7조).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 ① 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개발·보급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인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사회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안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회서비스 개발·보급,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재정지원, 품질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 심의사항 중에는 사회서비스 개발, 종사자 역량 강화, 서비스 품질인정에 관한 사항과 같이 매우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원회 구성은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관과 공무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 다만, 기본계획의 수립은 이미 장관이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심의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4. 금융·재정지원 및 조세특례

###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사회서비스 분야 투자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부터 제16조).

#### 제3장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시책

제14조(금융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과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지원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지원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별로 지원 대상·방법·규모·성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나. 검토의견

□ (금융지원) 제정안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와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과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투자조합 등에 대한 금융지원은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이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 및 성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우선, 안 제14조제1항제1호의 투자조합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직접 출자를 받게 되므로, 영업에서의 특혜를 받는 대상임에도 제정안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어, 그 선정기준이 전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위임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민법상 조합은 출자자로 이루어지는 조합원의 결정으로 운영되는데, 국가 및 지자체가 출자를 함으로써 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면, 조합원으로서 투자대상의 선정과 투자금액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출자 이후의 법률 관계도 복잡하여지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만일 일체의 조합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은 지지 않고 출자금만 투자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라는 표현은 사회서비스 분야 투자 목적의 ‘기관 등에 대한 자본 참여’ 등과 같은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14조제2항의 금융지원기관은 규정상 보고의무 등 많은 법적의무를 부과받음에도, 금융지원기관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공적 지원에 대한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내용의 추가 또는 삭제를 통한 정비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조세의 감면) 제정안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한 자와 품질인정을 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사회서비스 기반조성 및 품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 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는 동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 조세특례 입법례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sup>12)</sup>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개별 세법에서 조세감면 조치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개별법상의 감면 규정은 혼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납세자가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바로 조세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12) 법제처, 「2023 법령입안심사기준」, 313p

## 5.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품질인정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부터 제22조).

#### 제4장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17조(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교육을 제공하는 등 품질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지도·감독, 지원 수준, 등록·신고·지정 등에 관한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품질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품질의 우수성·안정성·신뢰성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품질인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품질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인정(이하 “품질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인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인정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품질인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품질인정과 그 신청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인정서와 인정마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인정을 받은 자에게 인정서를 교부하고 인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정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홍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정서 또는 인정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품질인정을 받은 기관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정마크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평가 면제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인정을 받거나 인정절차를 진행 중인 자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질 평가
2.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평가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평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장의 장이 협의한 평가

제21조(인정의 유효기간) ① 품질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정의 연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품질인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폐업을 하거나 인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정상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이 취소된 자는 품질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품질인정을 받을 수 없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품질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인정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보칙]

제25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정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료)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나. 검토의견

- (평가) 제정안 제17조(평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다각화된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임.
- 현재 사회서비스의 각종 평가들이 개별법상 규정되어 있는바, 사회서비스의 최소한의 관리로서 평가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 사회서비스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 >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다만,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30조에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는 제정안의 규정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지자체의 평가와 기존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며, 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의 품질평가는 동법에 근거하여 제공되고 있는 바우처서비스 5종<sup>13)</sup>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평가라는 점에서 제정안과 구별된다는 입장이나, 법 자체에서는 중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품질인정) 제정안은 사회서비스 품질의 우수성·안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인정을 부여함으로써, 제공기관들의 자발적 품질향상을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17조의 평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에서의 품질관리가 목적이라면, 안 제18조의 품질인정은 우수한 제공기관에 대한 자발적 품질향상 유도가 목적으로 보임.

□ 참고로,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2022년~2024년)을 수행중으로, 2023년 기준 4개 유형 서비스<sup>14)</sup>에 대해 총 161개 제공기관이 품질인증을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4개 유형 서비스 대상 24개 제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였음(【참고3】 참조).

- 제정안 조항은 해당 시범사업이 2024년 종료된 이후, 사회서비스 품질인정제의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 기능할 것

13) 산모신생아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14)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 발달재활서비스

으로 판단됨.

- 다만,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품질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품질인정을 신청해야 하고, 안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품질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의무적 취소사유와 비교적 경미한 사유의 구분 없이 2년이라는 장기간 품질인정을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의무적 취소사유에 한하여 2년의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6. 지도와 감독

###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 제5장 보칙

- 제24조(지도와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나. 검토의견

□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자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원활한 수행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 이와 유사하게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sup>15)</sup>

---

### 15)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질문 또는 회계감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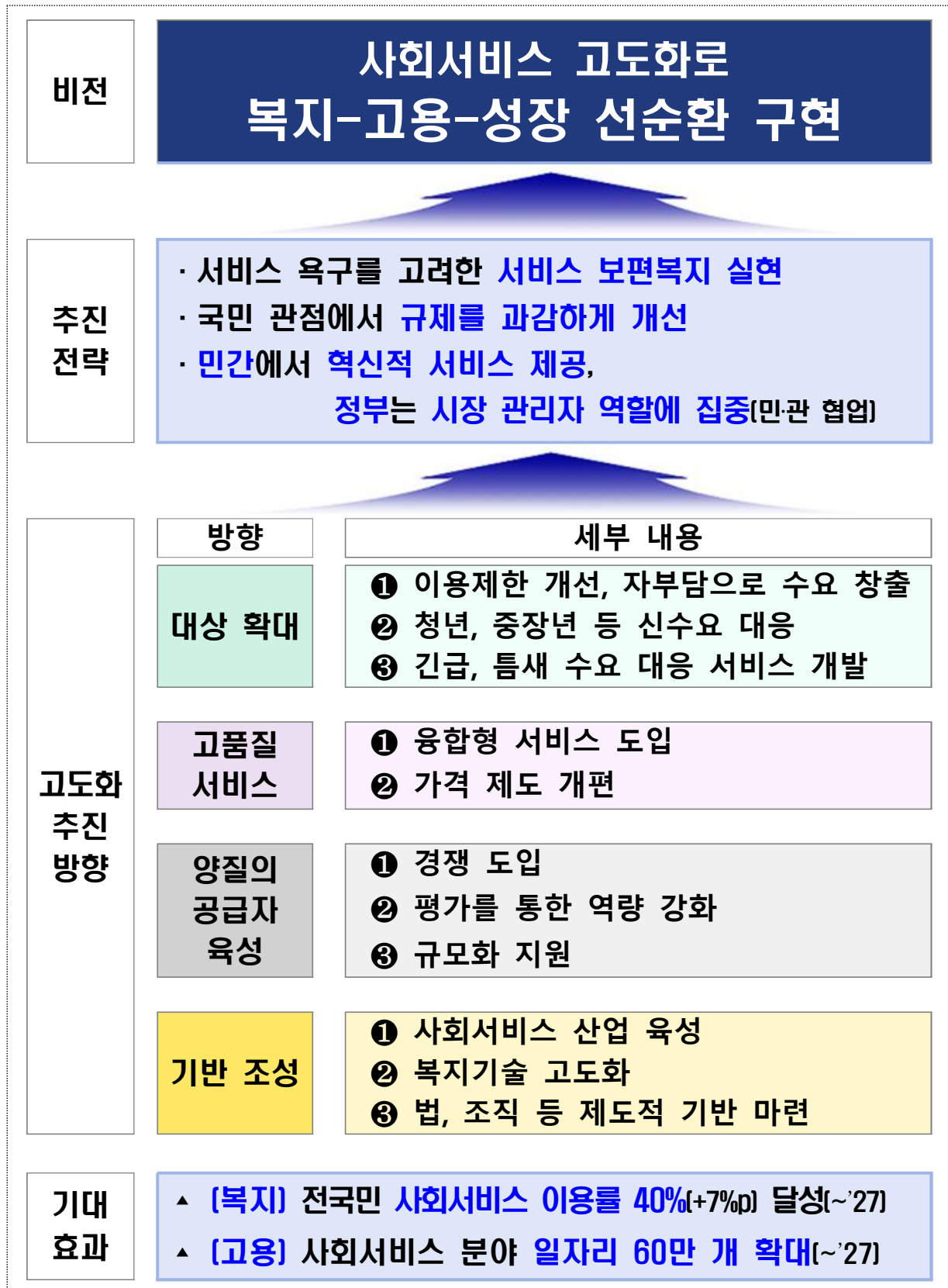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감독·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제26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⑦ 지도·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축탁할 수 있으며 축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당초 지도·감독의 목적을 넘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상 개입으로까지 과도하게 행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및 검사의 대상을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것 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497 |



|              |                          |
|--------------|--------------------------|
| <b>【참고2】</b> | <b>2023년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b> |
|--------------|--------------------------|

□ (목적)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기술 혁신 기업에 투자 지원

\* (모태펀드)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운용사가 결성한 펀드에 출자하는 간접투자펀드(Fund of Funds)**로, 중기부 등 10개 부처가 출자 중

○ 정부의 초기자금(Seed Money) 투입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이 이를 통해 기술개발비, 운영비 등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펀드 조성액) 145억 원 (정부 100억원 + 민간 45억원\*)

\* 당초에 민간 자금을 40억원 모집 예정이었으나 운용사에서 5억원 초과 모집

□ (법적 근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

\* (법률 제67조)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은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제3호: 벤처투자)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 (투자 대상)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약 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과 관련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조건 충족하는 기업에 20% 이상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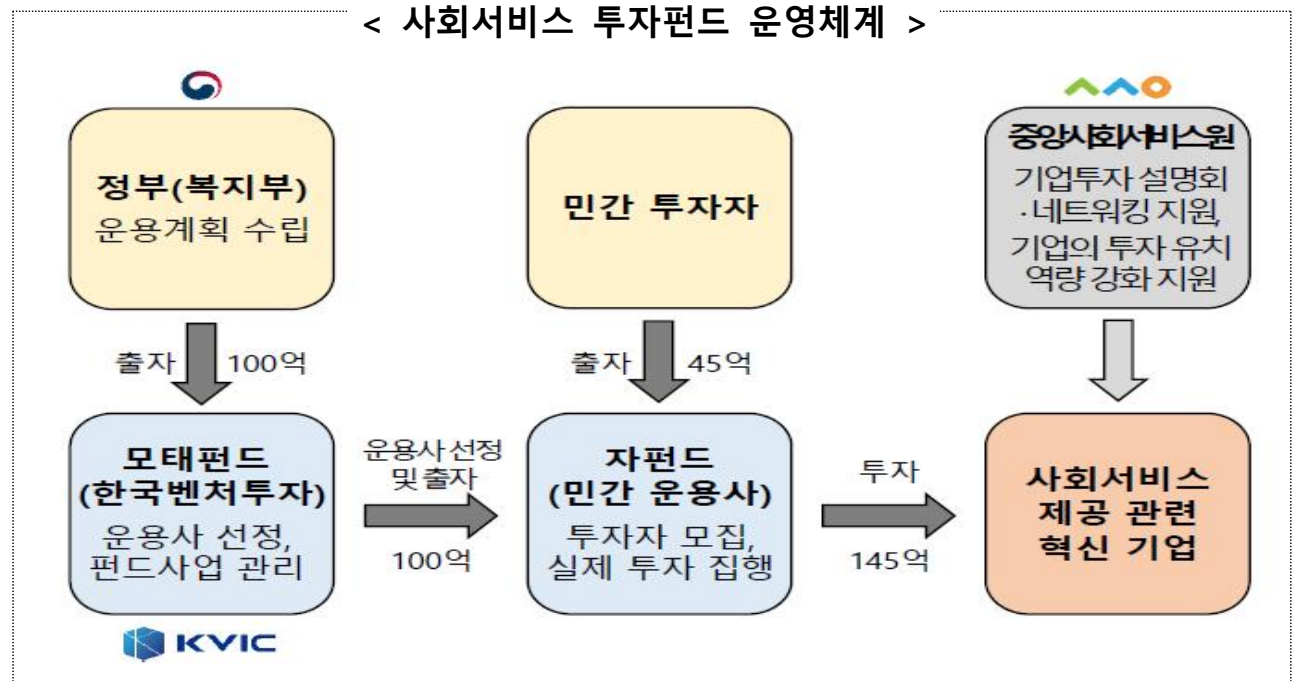
①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업

\*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 하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

\*\* 사회서비스 중 보건의료·환경 분야는 제외(사유 : 보건의료는 헬스케어 집중투자 우려, 환경은 ESG 등 타 펀드 존재)

②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효과적 이용·제공에 도움을 주는 일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하거나 기기·장비를 개발 또는 상용화하는 기업

- (운용 방식) ❶복지부는 펀드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모태펀드에 예산 출자, ❷한국벤처투자(중기부 산하기관)는 펀드운용사 선정 등 사업 관리, ❸선정된 펀드운용사는 민간 출자금을 추가로 모집하여 투자 집행



- (정부) 매년초 펀드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투자대상 및 비율 등을 정하고, 모태펀드에 정부예산 출자, 투자현황 등 모니터링 수행
-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계획을 반영하여 출자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운용사 선정, 정부예산 출자, 모태펀드 전체사업 관리 등 수행
- (운용사)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대상 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이 계약대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

\* 운용사는 투자계약 체결 전에 해당 투자대상 기업이 주목적 투자대상 기업 (사회서비스)이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민간자문단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함

- (추진 경과) 예산 심의('22년) → 운용계획 수립 및 공고('23.3월) → 운용사 선정('가이아벤처파트너스', '23.6월) → 펀드 조성 완료('23.9월)

- (목적)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출자,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창업·벤처기업의 투자유치 확대 및 성장을 지원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9에 따라 '05년 결성 (법 제정으로 현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됨)
- (내용)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벤처펀드(모태 자펀드)에 출자하는 펀드(Fund of Funds 개념)
- (도입배경) 30년 동안 운용되는 모태펀드를 결성\*하여 회수재원 재투자 구조 도입,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
  - \* 모태펀드 도입 이전에는 중진기금에서 창업투자조합(펀드)에 직접 출자 ⇒ 단년도 예산편성 및 결산으로 경직적·단기적으로 운용되는 문제가 있었음
- (운용현황) 그간('05~'24.4) 모태펀드는 총 1,200여개, 40.9조원 규모 자펀드를 조성하고, 10,000여개 창업·벤처기업 등에 31.3조원 투자
- (운용구조) 중기부 등 10개 부처가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모태펀드가 민간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벤처펀드에 출자

< 모태펀드 운용구조 >



【참고3】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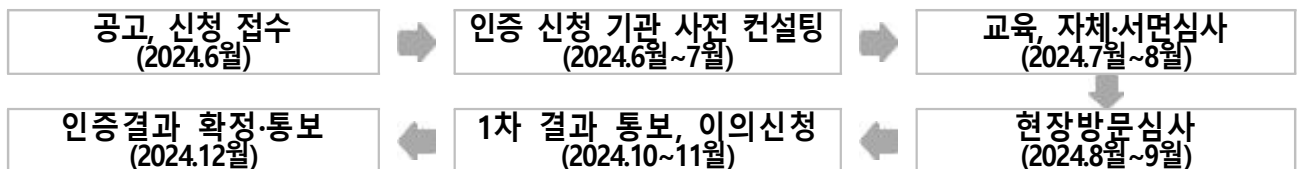
□ 추진배경

- 이용자 선택권 강화 및 구매력 있는 중산층으로 수요 확대 등 사회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품질관리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점검·확인 중심의 의무적 평가뿐만 아니라 **제공기관의 자발적 품질제고 유도**를 위한 **품질인증제 도입**
    - \* 인증을 통한 국가의 서비스 품질 담보 → 인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수요 증가 → 이용자 확보를 위한 제공기관의 자발적 질 제고

□ 인증 개요

- (주체/유효기간) 보건복지부장관 / 인증심의 결과 통보 후 **3년**
- (대상)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 발달재활서비스 4종 바우처 제공기관 및 동일 서비스 제공하는 비바우처 기관
- (기준)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과 이에 영향을 주는 인적·물적 제공 여건 등 **5개 영역, 12개 항목, 32개 지표**
- (혜택)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서·인증현판 수여, 기관홍보물·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 활용 및 홍보 지원 등
- (사후관리) 인증 자격의 유지·관리, 인증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차별(’22년, ’23년) **사후컨설팅 및 현장점검 실시**
  - \* 인증수준 미이행 등에 따른 인증취소, 자격 정지 등 세부 기준 마련·이행

○ 추진절차



○ 추진체계

|          |                                                                                     |
|----------|-------------------------------------------------------------------------------------|
| 보건복지부    |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총괄<br>· 법령 개정, 관계 부처 협의 및 정책 수립                                  |
| 중앙사회서비스원 |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운영 지원·관리 등 사무<br>- 인증 기준 관리, 성과분석 등<br>· 인증심사위원 관리 및 인증위원회 구성·운영 |

## 붙임 1

##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인증기준

- (인증지표 개요) ①서비스 운영 ②인적 자원 영역, ③안전·예방 영역, ④재정건전성 영역, ⑤경영관리 영역 총 5개 영역으로 구성

| 영역                | 품질인증기준(12) |                  | 품질인증지표(32)                  |  |
|-------------------|------------|------------------|-----------------------------|--|
| I.<br>서비스<br>운영   | 1.1        | 서비스 운영 규정의 확립    | 1.1.1 서비스 운영 규정의 체계         |  |
|                   |            |                  | 1.1.2 서비스 운영 규정의 공유         |  |
|                   | 1.2        | 서비스 기반구조의 운영     | 1.2.1 서비스 제공환경의 적합성         |  |
|                   |            |                  | 1.2.2 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 관리       |  |
|                   |            |                  | 1.2.3 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의 운영      |  |
|                   | 1.3        | 서비스 제공과정의 운영     | 1.3.1 이용자 중심 서비스 계획 수립      |  |
|                   |            |                  | 1.3.2 계획기반 서비스 실행 관리        |  |
|                   |            |                  | 1.3.3 목표기반 서비스 모니터링         |  |
|                   |            |                  | 1.3.4 서비스 종결 관리             |  |
| II.<br>인적<br>자원   | 2.1        | 인사관리체계의 운영       | 2.1.1 인사관리규정의 적절성           |  |
|                   |            |                  | 2.1.2 인력 모집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     |  |
|                   |            |                  | 2.1.3 근무평정체계의 운영            |  |
|                   | 2.2        | 복무관리체계의 운영       | 2.2.1 복무관리규정의 적절성           |  |
|                   |            |                  | 2.2.2 종사자 권리보호 및 고충처리       |  |
| III.<br>안전·<br>예방 | 3.1        | 시설안전관리체계의 운영     | 3.1.1 시설안전관리규정 운영의 적절성      |  |
|                   |            |                  | 3.1.2 시설안전관리체계의 운영          |  |
|                   |            |                  | 3.1.3 종사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운영     |  |
|                   | 3.2        | 위험예방체계의 운영       | 3.2.1 위험예방체계의 적절성           |  |
|                   |            |                  | 3.2.2 위험예방체계의 이해관계자 공유      |  |
|                   | 3.3        | 정보관리체계의 운영       | 3.3.1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운영          |  |
|                   |            |                  | 3.3.2 문서 및 기록 관리지침의 운영      |  |
| IV.<br>재정<br>건전성  | 4.1        | 재무(회계) 관리 체계의 확립 | 4.1.1 회계규칙(규정) 운영의 적절성      |  |
|                   |            |                  | 4.1.2 회계처리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  |
|                   | 4.2        | 재무(회계) 책무성 강화    | 4.2.1 회계결산 체계의 운영           |  |
|                   |            |                  | 4.2.2 재정책무성 확보              |  |
| V.<br>경영<br>관리    | 5.1        | 기관운영규정의 운영       | 5.1.1 사회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운영규정 확립  |  |
|                   |            |                  | 5.1.2 사회서비스 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  |  |
|                   |            |                  | 5.1.3 사회서비스 기관의 재정 및 회계 관리  |  |
|                   |            |                  | 5.1.4 사회서비스 기관의 시설안전 및 정보관리 |  |
|                   |            |                  | 5.1.5 사회서비스 기관의 이해관계자 권리보호  |  |
|                   | 5.2        | PDCA기반 사업계획의 운영  | 5.2.1 기관장의 전문성과 리더십         |  |
|                   |            |                  | 5.2.2 사업계획의 실행 및 평가         |  |

## 붙임 2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참여 대상사업 개요

###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목적)**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자리 창출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자자체 예산범위 내 150% 초과 지원 가능)
- **(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산모 정보제공(감염 예방 및 관리 등),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 ②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목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의 과잉행동장애(ADHD), 주의력 결핍 등의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18세 이하)
- **(내용)** 프로그램(언어·놀이·미술·음악·심리상담 등)을 선택하여 주 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부모교육) 제공

### ③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 **(목적)** 아동·청소년 시기의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미래 비전 형성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7세~15세 아동·청소년
- **(내용)** 체계적인 비전·리더십 형성 프로그램(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등) 및 체험학습 등 지원

### ④ 발달재활서비스

- **(목적)**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의사소통·감각·운동 등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내용)** 서비스 제공인력이 기관 또는 가정에 방문하여 1:1 서비스(언어·청능, 미술심리·음악·놀이심리·행동발달, 감각발달·운동발달 재활영역 등) 제공